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28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(2022.12.31)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(안 제6조).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<sup>1)</sup>에 따라 만료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(2022.12.31.)을 5년간 연장(2027.12.31.)하기 위해 제출됨.

### 나.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1965년에 조성되었고, 2018년부터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·운용하고 있음.
  - 용자계정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용자와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며, 투자계정<sup>2)</sup>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조성한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를 수행하고 있음.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2)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

- 용자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7,646억 8천 6백만원으로, 일반회계 전입금 9,270억 8천 6백만원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,400억원, 운용손실 4,024억원임.

### <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기금조성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| 기금총액 ①+②-③ | 일반회계 전입금(누계) ① |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② | 기금운용수익* (누계)③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764,686    | 927,086        | 240,000        | △402,400      |

※ 2022.9월말 기준, 기금운용수익: 이차보전금, 기금운용수수료 등 소모성 지출 반영

- 용자계정에서 은행에 대하된 자금은 6,693억 4천 3백만원이며, 중소기업시설 설치지원금은 16억 8천 8백만원, 예치되어 있는 미대하자금은 936억 5천 5백만원임.
- 투자계정의 2022년말 조성액은 451억 8천 6백만원으로, 전년말 대비 128억 2천 8백만원 감소함.

### <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 조성현황 >

(단위:백만원)

| 2021년말 조성액 | 2022년 조성계획 |        |         | 2022년말 조성액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| 수입         | 지출     | 증감      |            |
| 58,014     | 40,788     | 53,616 | △12,828 | 45,186     |

- 투자계정은 서울시가 투자펀드별 조성액의 5~15%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을 합해 조성하며, 전문 펀드운용사가 일정 기간<sup>3)</sup> 운영함.

3)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지침에 따라 운영기간을 8년(4년 거치, 4년 회수)으로 정했으나 피투자기업의 성장과

- 투자계정으로 조성된 혁신성장펀드는 ▶ 4차 산업혁명, ▶ 스마트시티, ▶ 문화콘텐츠, ▶ 창업지원, ▶ 재도전지원, ▶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약 3조 4,029억원(서울시 출자분 1,751억원)이 조성됨(목표대비 283%).

### < 혁신성장펀드 연차별 조성 내역 >

(단위 : 억원 / 괄호:市 출자액)

| 구분     | 합계                | '19년             | '20년            | '21년             | '22년(10월 기준)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합계     | 34,029<br>(1,751) | 4,435<br>(192.5) | 12,976<br>(448) | 8,342<br>(508.5) | 8,276<br>(602)   |
| 4차산업혁명 | 4,669<br>(277.5)  | 997<br>(32.5)    | 1,892<br>(72)   | 1,080<br>(78)    | 700(예정)<br>(75)  |
| 스마트시티  | 4,274<br>(272.5)  | 386<br>(22.5)    | 2,323<br>(72)   | 1,065<br>(78)    | 500(예정)<br>(120) |
| 문화콘텐츠  | 3,278<br>(160)    | 700<br>(30)      | 505<br>(30)     | 759<br>(40)      | 1,314<br>(54)    |
| 창업지원   | 13,498<br>(536)   | 772<br>(42.5)    | 5,766<br>(168)  | 2,488<br>(127.5) | 4,472<br>(198)   |
| 재도전지원  | 2,748<br>(165)    | 200<br>(15)      | 1,328<br>(45)   | 700<br>(60)      | 520<br>(45)      |
| 바이오    | 5,862<br>(340)    | 1,380<br>(50)    | 1,162<br>(55)   | 2,250<br>(125)   | 1,070<br>(110)   |

- 이 중 서울 소재 470개 기업에 6,451억원의 목적 투자가 이뤄져 매출액(4조 4,075억원), 고용인원(1만 5,631명), 투자유치(4조 2,914억원) 등의 성과를 달성함.

### < 혁신성장펀드 운영실적 >

| 구분            | 2019  | 2020   | 2021   | 2022   | 합계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市 목적 투자기업(개)  | 117   | 128    | 103    | 122    | 470    |
| 투자기업 매출액(억)   | 8,893 | 13,387 | 21,795 | 35,000 | 44,075 |
| 투자기업 고용지표(명)  | 5,395 | 3,539  | 6,694  | 7,500  | 15,631 |
| 대외 후속투자 유치(억) | 7,868 | 9,835  | 25,211 | 32,000 | 42,914 |

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자금회수를 결정하는 구조로 인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.

- 2022년까지 투자가 진행중에 있어 전체적인 회수금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우며, 현재 9개 기업에서 약 13억 5천만원의 투자금이 조기 회수됨.
- 서울시는 혁신성장펀드 조성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(바이오, AI, 콘텐츠 등)에 대한 펀드 투자를 통해 ‘서울 비전 2030 펀드’ (2023~2026)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계획임.<sup>4)</sup>
-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, 서울시는 총 3,500억원을 바이오,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액을 합쳐 5조원의 펀드를 8년(투자 4년, 회수 4년)간 운용할 예정임.

**<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계획 >**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조 성 방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 성 규 모<br>(市출자액)    | 2023년<br>출자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계                 | 투자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조원<br>(3,500억원)     | 395억원        |
| ① 스케일업<br>펀드(신규)   | ·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<br>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              | 1조 4천억원<br>(1,100억원) | 80억원         |
| ② 첫걸음동행<br>펀드(신규)  | · 市 정책사업(R&D지원사업, 서울 비전 2030 등)<br>연계 및 민간시장 투자 소외기업 성장지원 | 25백억원<br>(500억원)     | 30억원         |
| ③ 디지털대전환<br>펀드(신규) | ·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<br>혁신기술기업(ICT, AI, 빅데이터 등) 지원         | 1조원<br>(600억원)       | 30억원         |
| ④ 창업지원<br>펀드(유지)   | ·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선배 기업과의<br>상생협력 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1조원<br>(550억원)       | 120억원        |
| ⑤ 서울바이오<br>펀드(유지)  | ·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/의료/헬스케어<br>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 지원           | 75백억원<br>(400억원)     | 75억원         |
| ⑥ 문화콘텐츠<br>펀드(유지)  | · K-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 유망<br>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              | 60백억원<br>(350억원)     | 60억원         |

4) 2023년도 출자에는 기조성된 혁신성장펀드 중 서울비전 2030펀드로 이어지지 않는 4차산업혁명펀드, 스마트시티펀드, 재도전지원펀드 잔여금 125억원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됨.

## 다.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은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<sup>5)</sup>.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의 타당성과 필요성, 설치목적의 달성, 사업의 지속성,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, 대출금리·물가 상승, 원자재 가격 급등, 미·중간 무역 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.
- 따라서 서울시의 공적 정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.
- 또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우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관련 펀드의 조성·운영이 계속 요구됨.

---

5)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15.7.24.) 이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까지 1차례 연장(2017.9.6.)된 바 있음.